

# 2025년 (재)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1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0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(재)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4조에 따라 (재)김포시민장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김포시민장학회

나. 사업내용

- 관내 거주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,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
※ 누적실적 : 장학생 총 5,313명, 장학금 총 6,581백만원 지급

다. 필요성

- 인구증가에 따른 장학금 확충 및 장학회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 필요
-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
라. 추진계획

- 2025. 1. 출연금 지급
- 2025. 4.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접수
- 2025. 6. 장학금 지급

마. 2024년도 장학생 선발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고등학생	대 학생	특기생			비고
				초	중	고	
인원	471	153	297	8	9	4	
지급액	596,800	76,500	500,700	5,600	8,000	6,000	

#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제20조(재정지원)

나. (재)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(재정지원)

### 4. 예산수반사항

가. 출연 예정금액 : 584백만원

- 장학금 지원 : 540백만원
- 운영비(인건비 및 사무관리비) : 44백만원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백만원)

2024년도 시 출연금	2025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584	584	-

소관 실·과·소		총무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총무과장 황규만
	팀장 직위·성명	총무팀장 김효순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곽진용(☎2036)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- 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## ○ (재)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

- 제4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학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### 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역 내 우수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달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

## 2. 비용추계

### 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: 540,000천원
- 장학회 운영비(사무원 인건비, 사무관리비) : 44,000천원

## 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장학사업(출연금)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○ 예산과 협의필

###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○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총무과 과장 황규만 팀장 김효순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세외수입	540,000	540,000	540,000	540,000	540,000	2,700,000
지방세수입	44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224,000
세 출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(재)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재원 조달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584,000	585,000	585,000	585,000	2,924,000
	세외수입	540,000	540,000	540,000	540,000	2,700,000
	지방세수입	44,000	45,000	45,000	45,000	224,000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